

의안번호	2216101
의 퇴 인	허종식 의원
회 답 일	2026. 2. 25.
추 계 번호	26A0257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)	○ 산업통상부장관이 수립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다음 사항을 추가함(제1항제9호의2) － 9의2. 산학연 클러스터(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건물·시설 등이 집적한 단지를 말한다) 조성계획. 이 경우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이나 증설·이전에 관한 계획을 포함할 수 있음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6조(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수립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“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”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이때 산학연 클러스터는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건물·시설 등이 집적한 단지를 말함
-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산학연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제자유구역과 해당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규모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

- 참고로, 현행 경제자유구역은 9개 지역(인천, 부산·진해, 광양만권, 경기, 대구·경북, 강원, 충북, 광주, 울산)에 101개 지구가 있으며, 총 면적은 274.90km²임
- 한편, 산업통상부장관이 수립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, 각 시·도에서 수립하는 일부 단위개발사업지구 개발계획에는 산학연 클러스터가 포함되어 있음(3개 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 8개 클러스터)

[표 1] 시·도의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사업 현황(경제자유구역 내 단위개발사업지구 기준)

구분	단위개발사업지구	개수	클러스터명	비고
인천	인천글로벌캠퍼스	3	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기획 및 개발	조성중
			산학협력 공동마케팅 및 네트워킹	조성중
			창업프로그램 지원	조성중
경기	배곧지구	2	육해공 무인이동체 클러스터	조성중
			글로벌 교육의료 복합 클러스터	조성중
	ASV지구 (안산 사이언스 밸리)	1	첨단로봇 산학연 클러스터	조성중
울산	R&D비즈니스 밸리	1	R&D비즈니스 밸리	조성완료
	수소산업거점지구	1	수소산업거점지구	조성완료

자료: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